

세종 우미 린 센터파크(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 글미마을 9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44-866-366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7.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31.(금)	2026.08.10.(월)	2026.08.11.(화)	2026.08.12.(수)	2026.08.19.(수)	2026.08.21.(금)~ 2026.08.25.(화)	2026.08.31.(월)~ 2026.09.03.(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j3.lynn.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 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3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5.07.3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60%를 우선공급하며,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40%를 공급(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6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4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8.10.(월)	2026.08.11.(화)	2026.08.12.(수)	2026.08.19.(수)	2026.08.21.(금)~ 2026.08.25.(화)	2026.08.31.(월)~ 2026.09.03.(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5-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8.1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22079호(2026.07.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동 5204-1번지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5~20층 12개동 총 676세대

[특별공급 436세대(기관추천 64세대, 다자녀가구 67세대, 신혼부부 102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115세대, 신생아 6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323	01	045.9761	45	45.9761	16.8120	62.7881	39.3679	102.1560	39.8700	44	4	-	7	-	8	4	23	21	7
	02	059.9747	59	59.9747	23.0703	83.0450	51.3545	134.3995	52.0094	100	10	-	15	-	17	10	52	48	15
	03	084.9165A	84A	84.9165	31.4862	116.4027	72.7115	189.1142	73.6388	239	22	30	36	9	40	24	161	78	18
	04	084.9738B	84B	84.9738	31.3658	116.3396	72.7605	189.1001	73.6884	46	5	6	7	2	8	5	33	13	2
	05	084.9395C	84C-1	84.9395	31.4210	116.3605	72.7312	189.0917	73.6586	3	1	1	2	-	2	1	7	5	1
			84C-2	84.9395	31.4210	116.3605	72.7312	189.0917	73.6586	3									
			84C-3	84.9395	31.4210	116.3605	72.7312	189.0917	73.6586	6									
	06	084.9418D	84D	84.9418	30.8506	115.7924	72.7332	188.5256	73.6607	202	19	26	30	8	34	20	137	65	14
	07	084.9942E	84E-1	84.9942	31.0068	116.0010	72.7779	188.7789	73.7061	3	1	1	1	-	1	1	5	1	1
			84E-2	84.9942	31.0068	116.0010	72.7779	188.7789	73.7061	3									
08	084.9603F	84F	84.9603	31.5988	116.5591	72.7490	189.3081	73.6767	27	2	3	4	1	5	3	18	9	2	
합 계										676	64	67	102	20	115	68	436	240	6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 주택형	045.9761	059.9747	084.9165A	084.9738B	084.9395C			084.9418D	084.9942E		084.9603F
약식표기	45	59	84A	84B	84C-1	84C-2	84C-3	84D	84E-1	84E-2	84F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타입·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청약 신청은 약식표기(개별타입)가 아닌 정확한 주택형(045.9761, 059.9747, 084.9165A, 084.9738B, 084.9395C, 084.9418D, 084.9942E, 084.9603F) 기준으로만 가능하며,

특히 084.9395C(84C-1,84C-2,84C-3) 및 084.9942E(84E-1,84E-2) 주택형은 타입별 면적이 동일하나 발코니 위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동·호 배치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 바 청약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식표기는 기존 승인 및 설계도서상의 표시 방식임)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45	59	84A	84B	84C-1 84C-2 84C-3	84D	84E-1 84E-2	84F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2	5	1	1	4	-	-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3	1	-	2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1	-	2	-	-	7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1	-	2	-	-	7
	북한이탈주민		1	-	-	-	-	-	-	-	1
	우수선수		-	-	-	-	-	1	-	-	1
	시책추진(입주기업 종사자)		-	3	5	1	-	4	-	1	14
	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	-	1	2	-	-	2	-	-	5
		대전광역시	-	-	2	-	-	1	-	1	4
충청남도		-	1	1	-	-	1	1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30	6	1	26	1	3	67
신혼부부 특별공급			7	15	36	7	2	30	1	4	10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9	2	-	8	-	1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8	17	40	8	2	34	1	5	115
신생아 특별공급			4	10	24	5	1	20	1	3	68
합 계			23	52	161	33	7	137	5	18	43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2027.01.15.	2027.05.17.	2027.09.17.	2028.03.15.	2028.07.18.	2028.12.15.	입주 시
45	44	911동 1~7호	5~9층	21	74,605,200	220,394,800	295,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88,500,000
			4층	7	74,605,200	215,894,800	290,500,000	29,05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450,000
			3층	7	74,605,200	212,894,800	287,500,000	28,75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550,000
			2층	5	74,605,200	206,894,800	281,500,000	28,15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84,750,000
			1층	4	74,605,200	200,894,800	275,500,000	27,55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82,950,000
59	100	901동 3,4,5호 905동 1,2,3호 906동 1호 907동 1,2,5,6,7호 912동 3,4,5호	5~9층	54	97,320,600	338,179,400	435,500,000	43,55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950,000
			4층	15	97,320,600	331,479,400	428,800,000	42,88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9,120,000
			3층	15	97,320,600	327,079,400	424,400,000	42,44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560,000
			2층	15	97,320,600	318,279,400	415,600,000	41,56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5,040,000
			1층	1	97,320,600	309,379,400	406,700,000	40,67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2,43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2027.01.15.	2027.05.17.	2027.09.17.	2028.03.15.	2028.07.18.	2028.12.15.	입주 시
84A	175	902동 3,4호 903동 2호 904동 1,2호 908동 2,3호 909동 4호 910동 2,3,5호	10층 이상	82	137,793,800	507,806,200	645,600,000	64,56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4,040,000
			5~9층	55	137,793,800	498,206,200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4층	11	137,793,800	488,506,200	626,300,000	62,63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8,070,000
			3층	11	137,793,800	482,006,200	619,800,000	61,98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6,420,000
			2층	10	137,793,800	469,106,200	606,900,000	60,69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2,610,000
			1층	6	137,793,800	456,206,200	594,0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64	901동 1호 905동 5호 906동 3,4,5호 907동 3호 912동 1호	10층 이상	10	137,793,800	494,906,200	632,700,000	63,27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190,230,000
			5~9층	30	137,793,800	485,406,200	623,200,000	62,32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62,300,000	187,080,000
			4층	7	137,793,800	475,906,200	613,700,000	61,37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84,530,000
			3층	7	137,793,800	469,606,200	607,400,000	60,74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460,000
			2층	7	137,793,800	457,006,200	594,800,000	59,48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920,000
			1층	3	137,793,800	444,306,200	582,100,000	58,21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58,200,000	174,690,000
84B	46	903동 4호 908동 5호 909동 2호	10층 이상	33	137,886,600	507,713,400	645,600,000	64,56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4,040,000
			5~9층	8	137,886,600	498,113,400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4층	2	137,886,600	488,413,400	626,300,000	62,63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8,070,000
			2층	2	137,886,600	469,013,400	606,900,000	60,69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2,610,000
			1층	1	137,886,600	456,113,400	594,0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84C-1	3	909동 2호	5~9층	1	137,830,900	498,169,100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4층	1	137,830,900	488,469,100	626,300,000	62,63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8,070,000
			2층	1	137,830,900	469,069,100	606,900,000	60,69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2,610,000
84C-2	3	909동 2호	5~9층	2	137,830,900	498,169,100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3층	1	137,830,900	481,969,100	619,800,000	61,98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6,420,000
84C-3	6	903동 4호 908동 5호	5~9층	4	137,830,900	498,169,100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3층	2	137,830,900	481,969,100	619,800,000	61,98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6,420,000
84D	165	902동 1호 903동 1,3호 904동 4호 908동 1,4호 909동 1,3호 910동 1,4호	10층 이상	89	137,834,800	487,165,200	62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5~9층	47	137,834,800	477,865,200	615,700,000	61,57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85,130,000
			4층	9	137,834,800	468,465,200	606,300,000	60,63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2,070,000
			3층	9	137,834,800	462,165,200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2층	8	137,834,800	449,665,200	587,500,000	58,75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550,000
			1층	3	137,834,800	437,165,200	575,0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172,500,000
	37	901동 2호 905동 4호 906동 2호 907동 4호 912동 2호	5~9층	20	137,834,800	465,165,200	603,0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4층	5	137,834,800	456,065,200	593,900,000	59,39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8,710,000
			3층	5	137,834,800	449,865,200	587,700,000	58,77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730,000
			2층	5	137,834,800	437,665,200	575,500,000	57,55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172,950,000
			1층	2	137,834,800	425,365,200	563,200,000	56,32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9,08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2027.01.15.	2027.05.17.	2027.09.17.	2028.03.15.	2028.07.18.	2028.12.15.	입주 시
84E-1	3	909동 3호	5~9층	2	137,919,800	477,780,200	615,700,000	61,57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85,130,000
			3층	1	137,919,800	462,080,200	60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84E-2	3	909동 3호	5~9층	1	137,919,800	477,780,200	615,700,000	61,57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85,130,000
			4층	1	137,919,800	468,380,200	606,300,000	60,63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2,070,000
			2층	1	137,919,800	449,580,200	587,500,000	58,75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550,000
84F	27	902동 2호 904동 3호	10층 이상	9	137,864,700	507,735,300	645,600,000	64,56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4,040,000
			5~9층	10	137,864,700	498,135,300	636,0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4층	2	137,864,700	488,435,300	626,300,000	62,63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8,070,000
			3층	2	137,864,700	481,935,300	619,800,000	61,98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6,420,000
			2층	2	137,864,700	469,035,300	606,900,000	60,69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2,610,000
			1층	2	137,864,700	456,135,300	594,0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대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 ■ 시책추진(입주기업 종사자) : 세종특별자치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2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2">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2">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7% 범위 : 115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7.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8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흥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6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 40% 순으로 공급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19.(수) ~ 2026.08.28.(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8.1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2026.08.21.(금)~2026.08.25.(화) (5일간, 10:00~17:00)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5-30)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청약자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비속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 인터넷발급 불가)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기존 주택 처분조건 서약서	본인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아래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기존 주택 처분조건 서약서	본인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의 3개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필수 제출 - (발급기관) 건강보험공단 ※ 공단 직접방문 필수(온라인 발급시 3개년도 출력 불가)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기존 주택 처분조건 서약서	본인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아래 신생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 비치)
	○		기존 주택 처분조건 서약서	본인	기존 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외 불가] (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생아,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당담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부양가족 기간산정,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부적격 의심 시 사업주체는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생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신규취업자 :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 계속근로자 :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④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①,② 해당직장 ③,④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자영업자	법인대표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인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등기소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 ② 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직장,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직장,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기간으로 발급)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음(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생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정부24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처)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 기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 고
2026.08.31.(월) ~ 2026.09.03.(목) (4일간, 10:00~17:00)	세종 우미 린 센터파크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5-30)	044-866-3666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	-	- 아파트 공급계약 및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유상오피션) :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50%)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위임장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구비)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매도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매수인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 금 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모계좌)	전북은행	1013-01-6436503	코리아신탁(주)
	중도금·잔금(가상계좌)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해야 함
-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 상기 관리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예시 : 901동 1101호 → 9011101홍길동)
-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가능날짜는 별도 통보 예정이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음
-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일정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 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공급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정보제공 미동의를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자격 확인 구비서류 유의사항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특별공급 특례 제외)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 및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가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실내놀이터, 공유오피스 등),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됨.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들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됩니다.**

10 추가선택품목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45	59	84A	84B	84C-1	84C-2	84C-3	84D	84E-1	84E-2	84F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3,450,000	7,630,000	6,820,000	6,860,000	7,690,000	7,690,000	7,130,000	11,220,000	11,790,000	11,790,000	7,11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자세한 발코니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호, 제46조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격 미포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해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함(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거실, 안방, 침실 등의 창호 사양이 비확장세대의 창호 사양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안방발코니 옆 실외기실에는 철제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거실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팬트리 내부에 환기구 및 조명,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발코니 비확장세대가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선택사항		에어컨 설치부위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7.01.15.	입주지정일
45	일반형	2대	- 거실, 침실1	삼성전자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3대	- 거실, 침실1, 침실2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고급형	2대	- 거실, 침실1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3대	- 거실, 침실1, 침실2		6,700,000	670,000	670,000	5,360,000
59	일반형	2대	- 거실, 안방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4대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고급형	2대	- 거실, 안방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4대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84A,84B, 84C-1/C-2/C-3, 84D,84E-1/E-2,84F	일반형	3대	- 거실, 안방, 주방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5대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고급형	3대	- 거실, 안방, 주방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5대	-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1,500,000	1,150,000	1,150,000	9,200,000
--	--	----	------------------------	--	------------	-----------	-----------	-----------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추가 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및 안방, 침실1, 침실2(45타입의 경우, 거실, 침실1, 침실2)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됨(거실 및 침실 매립박스의 위치는 세대별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침실1, 침실2(45타입의 경우, 거실, 침실1, 침실2))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실외기는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유상옵션 선택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실내기 위치는 건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선택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으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분양당시 선정된 제품으로 설치예정이며 제품의 품질·품귀·생산단종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제조사, 모델,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각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됨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45	59	84A	84B	84C-1 84C-2 84C-3	84D	84E-1 84E-2	84F	비고
가 구 및 인 테 리 어	현관	중문	1,700,000	1,1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59타입 외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 [59] 1연동 슬라이딩
	거실	광폭강마루	300,000	5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대형 아트월	1,100,000	1,1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400,000	1,400,000	1,300,000	-
		고급거실특화	6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45] - 시트알판 : 현관,거실,거실창호 [59,84A,84B,84C-1/C-2/C-3,84F] - 시트알판 : 현관,복도,거실,거실창호

											- 픽처레일 간접조명(일체형) : 거실,복도 [84D,84E-1/E-2] - 시트알판 : 현관,복도,거실,거실창호 - 픽처레일 간접조명(일체형) : 복도 - 간접조명 : 거실
		고급조명특화	2,000,000	3,7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5] 현관 : 간접조명(신발장 하부)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색온도조절) 침실1,2 : 사각직부등(디밍기능,색온도조절) [59] 현관 : 간접조명(신발장 하부)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색온도조절) 주방 : 원형직부등,우물천장(루버판넬,간접조명) 안방,침실1,2 : 사각직부등(디밍기능,색온도조절) [84A] 현관 : 간접조명(신발장 하부, 현관상부), 상부 간접조명 설치공간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색온도조절) 주방 : 원형직부등,우물천장(루버판넬,간접조명) 안방,침실1,2 : 사각직부등(디밍기능,색온도조절) [84B,84C-1/C-2/C-3,84F] 현관 : 간접조명(신발장 하부, 현관상부, 미드웨이 오픈장),상부 간접조명 설치공간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색온도조절) 주방 : 원형직부등,우물천장(루버판넬,간접조명) 안방,침실1,2 : 사각직부등(디밍기능,색온도조절) [84D,84E-1/E-2] 현관 : 간접조명(신발장 하부, 현관상부, 미드웨이 오픈장),상부 간접조명 설치공간 거실 : 직간접조명 4면(디밍기능,색온도조절) 주방 : 원형직부등,천장루버 안방,침실1,2 : 사각직부등(디밍기능,색온도조절)
가 구 및 인 테 리 어	주방	고급주방특화1	2,300,000	3,300,000	5,000,000	4,700,000	4,700,000	3,600,000	3,600,000	4,700,000	[45]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벽부),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고급수전 [59,84D,84E-1/E-2]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벽부),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고급수전,멀티콘센트(사각) [84A,84B,84C-1/C-2/C-3,84F]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벽부),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고급수전,멀티콘센트(사각),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고급주방특화2	2,900,000	4,000,000	5,700,000	5,400,000	5,400,000	4,400,000	4,400,000	5,400,000	[45] 세라믹(주방상판,벽부),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고급수전,하부장 색상변경 [59,84D,84E-1/E-2]

										세라믹(주방상판,벽부),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고급수전,하부장 색상변경,멀티콘센트(사각) [84A,84B,84C-1/C-2/C-3,84F] 세라믹(주방상판,벽부),상부장 하부 간접조명, 고급수전,하부장 색상변경,멀티콘센트(사각), 아일랜드장(세라믹 상판)
	주방장식장1			3,0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고급주방특화1 선택 시 가능 [84A] 장식장(상하부 간접조명), 시트알판, 키큰장,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부) [84B,84C-1/C-2/C-3,84F] 장식장(상하부 간접조명), 시트알판,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부)
	주방장식장2			3,4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 고급주방특화2 선택 시 가능 [84A] 장식장(상하부 간접조명), 시트알판, 키큰장, 세라믹(상판,벽부) [84B,84C-1/C-2/C-3,84F] 장식장(상하부 간접조명), 시트알판, 세라믹(상판,벽부)
	냉장고장	900,000	1,400,000	2,100,000	2,200,000	2,200,000	1,400,000	1,400,000	2,300,000	[45] 수납형 [45타입 외 전타입] 통합형/수납형 중 선택
	주방팬트리1			1,8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 주방팬트리2 선택 시 불가 [84A,84B,84C-1/C-2/C-3,84F] 시스템선반,센서조명,슬라이딩도어
	주방팬트리2			2,6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 주방팬트리1 선택 시 불가 [84A,84B,84C-1/C-2/C-3,84F] 가구선반,센서조명,슬라이딩도어
거실	복도팬트리				1,200,000		1,200,000	1,200,000		※ 84D 통합형 다용도실 선택 시 불가 [84B,84D,84E-1/E-2] 시스템선반,센서조명,가구도어,시트알판
	통합형 다용도실						2,200,000			※ 84D 복도팬트리 선택 시 불가 [84D] 가구선반,런드리선반,시트알판
안방	드레스룸 특화	1,400,000	2,800,000	3,100,000	3,000,000	3,000,000	3,100,000	3,100,000	3,100,000	[45] 침실1 유리도어,세미형 시스템선반 [45타입 외 전타입] 안방

											유리도어,입식 파우더장,세미형 시스템선반
	침실	침실 불박이장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45] 침실2 [45타입 외 전타입] 침실1
	욕실	공용욕실 고급특화	1,800,000	2,2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대형고급타일(벽부),고급타일(바닥),간접조명(욕실 장하부),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세면대,고급형 액 세서리
		부부욕실 고급특화		1,4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대형고급타일(벽부),고급타일(바닥),간접조명(욕실 장하부),고급세면대,고급형 액세서리
		복합환풍기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1개소당 단가
가 전	광파 오븐	삼성전자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
		LG전자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인덕 션	삼성전자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
		LG전자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
	식기 세척 기	삼성전자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
		LG전자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패키지 옵션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음.(단,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불가함) - 일부 유상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마감재로 제공되는 벽지의 종류, 색상, 패턴 등이 변경(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되므로 해당 내용은 마감재리스트 및 견본주택을 내방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센서등 또는 별도 등기구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벽체, 가구, 디딤판의 형태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대형 아트월은 납품자재 및 시공여건 등에 따라 타일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고급조명특화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일부 타입) 및 천정루버가 시공되지 않으며 조명의 종류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조명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안정기(SMPS)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조명형태, 설치위치 스위치의 구성, 공간별 조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고급주방특화 미선택 시, 주방 상판은 MMA, 벽부는 타일로 시공되며, 상부장 하부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음 - 공용욕실 고급특화 미선택 시, 벽 및 바닥은 일반타일, 양변기는 투피스 양변기, 세면대 및 악세사리는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욕실장하부 간접조명은 미설치됨 - 부부욕실 고급특화 미선택 시, 벽 및 바닥은 일반타일, 양변기는 비데일체형 양변기, 세면대 및 악세사리는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욕실장하부 간접조명은 미설치됨 - 인덕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으로 설치되며, 광파오븐 및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가구마감으로 설치됨 - 식기세척기의 전면패널은 가구마감과 유사하게 시공되나, LG전자 식기세척기의 경우, 패널 상단의 문열림 손잡이 부분은 가구마감이 되지 않음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 시,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미선택 시, 개별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패키지 옵션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항목	45	59	84A	84B	84C-1 84C-2 84C-3	84D	84E-1 84E-2	84F
거실패키지	대형 아트월, 고급거실특화, 고급조명특화	3,520,000	6,370,000	7,030,000	7,030,000	7,030,000	7,130,000	7,130,000	7,030,000
주방패키지1	고급주방특화1, 주방장식장1, 냉장고장			9,600,000	9,030,000	9,030,000			9,120,000
주방패키지2	고급주방특화2, 주방장식장2, 냉장고장			10,640,000	9,980,000	9,980,000			10,070,000
욕실패키지	공용욕실 고급특화, 부부욕실 고급특화, 복합환풍기(공용욕실, 부부욕실)		4,750,000	4,750,000	4,750,000	4,750,000	4,750,000	4,750,000	4,750,000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패키지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개별품목과 패키지옵션을 혼용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람.(예시: 거실패키지 + 주방 추가선택품목 개별선택 가능)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패키지 옵션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건립세대 해당)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패키지 옵션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패키지 옵션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패키지옵션 계약 후에는 패키지 옵션 내 개별품목 취소가 불가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패키지 옵션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패키지옵션 내 항목,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납부일정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027.01.15.	입주 시
전북은행	계약금(모계좌)	1013-01-6436553	코리아신탁(주)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금액의 80%
	중도금·잔금(가상계좌)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납부일정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시	2027.01.15.	입주 시
전북은행	계약금(모계좌)	1013-01-6437526	우미건설(주)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금액의 80%
	중도금·잔금(가상계좌)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901동 1101호 → 9011101홍길동)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문	각 목문틀(사춤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 (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실외기실 PL창호, 실외기실 루버창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하향식피난실 문틀 및 문
II	바닥	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III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냉매배관(안방+거실+침실1+침실2)
IV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장을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기계환기설비
V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악세사리류, 천장재 (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욕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자동식소화기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VII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
VI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약식표기	45	59	84A	84B	84C-1 84C-2 84C-3	84D	84E-1 84E-2	84F	비고
마이너스 옵션 금액	20,983,000	31,293,000	38,928,000	38,741,000	38,748,000	38,889,000	38,628,000	38,394,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배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선택하여 설치하는 거실 등기구는 월패드와 연동 문제 및 제품 사양에 따라 조명밝기 조절(디밍) 등의 부가 기능이 불가할 수 있음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 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분양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지역, 타사 또는 본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아파트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팸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하우스, 묘지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주변환경	단지 ▪ 단지 동측, 서측, 남측에는 약 20.5m 도로가 인접하여 있음.

관련	주변도로	▪ 주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하여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측 부출입구에서 서측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1개소 남측에서 북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 단지 중심 중앙녹도와 문화공원사이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1개소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총 4개 위치함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석 및 계단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지 주변부의 도로계획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개발주체의 상황이나 사정에 의하여 해당사업의 연기,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아니함.
	교육시설 관련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취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임. ▪ 초5-4(가칭 '다솜1초'), 중5-2(가칭 '연동중') 학교 설립은 5-2생활권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9년 3월로 계획 중이나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입학 관련)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원스톱 지원센터(☎ 320-2161~3)로 문의 하시기 바람 ▪ (학생 배치) 초등학교는 5-2생활권에 계획된 초5-4(가칭 '다솜1초'), 중학교는 5학군(중5-1(가칭 '합강중'), 중5-2(가칭 '연동중'), 중5-3),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배치 될 예정이며, 신설학교의 개교일과 입주개시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음 ▪ (통학구역 확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에서 개교 전에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과 신설학교 설립시기는 교육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 교육정책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학생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와는 무관하므로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인접시설	▪ 단지 북측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공원, 공공청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중앙에 위치한 중앙녹도, 문화공원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유치원 5-5, 초5-4 (가칭)다솜1초, 중5-2 (가칭)연동중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주변에 공동주택용지가 인접하여 착공 시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동, 향, 층별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남측에 도심형주거용지가 인접하여 있음. ▪ 단지 동측에 송전선로 및 철탑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모형도 및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형, 시설물의 형태,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 중앙녹도, 문화공원, 경관녹지 및 도로의 레벨, 형태, 시설계획 등 조성계획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기관 등의 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지구여건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경관녹지, 완충녹지 및 녹지 등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에 송전선로(철탑포함) 및 각종 도시시설물 등이 계획 또는 위치되어 있으며, 추후 해당 시설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준공 완료 시까지 공사 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BRT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당해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공동주택, 준주택, 상업시설, 초등학교·중학교,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반드시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및 주변 여건상 진입도로의 경사로와 단지 및 도로의 레벨차로 인해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로 계획 변경 또는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소음이 심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 5-2생활권 S1블록의 공동주택의 명칭은 “글미마을 9단지”이며,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기되지 않음.
기타사항	인허가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입주 및 등기(면적 정산)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 가감속차로 대지면적 정산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기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않음) ▪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시공 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계약자에게 반환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않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삭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 다함께 돌봄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리딩라운지, 오픈키친, 주민카페, 공유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다목적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상의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구역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인접단지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 철도, 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에어클린시스템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등에 표현되는 DA 및 그릴창의 크기, 위치 및 개소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되는 DA의 크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단지	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 패널 및 태양광 발전모듈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녹도 및 문화공원이 설치되며, 단지 외부 사람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펜스 설치 불가능) ▪ 단지 서측 중앙에 상수리나무 보존녹지(TPA)가 계획되어 있음.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인접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서측 주출입구와 동측 부출입구로 진입함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 2개소로 나누어 계획되어 있어,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차량진출입구, 램프를 함께 이용하며, 아파트 주차장과는 차단기로 분리되어 있어, 이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의 위치는 변동되거나 미설치 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 등의 외부시설물과 주동 옥상/옥탑 장식물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시공 시 디자인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배치 여건 및 세대간섭으로 인해 별도의 문주 설치가 되지 않음.
- 단지 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부출입구에 출입구와 레벨차를 연결해주는 경사로가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여부는 입주 시 관리사무소와 별도 협의 후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계획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일부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소에 쓰레기투입구(자동크린넷)이 설치될 예정임.**
- **쓰레기투입구(자동크린넷)는 지상으로 돌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실시설계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동선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각 동 주변 헬룸,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단지내 관로, 투입구 등)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각 동별 코어 조합에 따라 계단실 창호 설치 여부가 달라 견본주택에 구비된 건축 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기 바라며, 설치 시 고정창으로 설치되고, 3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단, 동별 환기창이 설치되는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 및 규모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 공간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환기구가 외벽 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모든 동(901~912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 옥외안테나 : 903, 904, 908, 909, 910 동 옥상층
 - 2) 중계장치 : 903, 904, 908, 909, 910 동 옥상층 / 903, 909동 지하1,2층(헬룸)

- 단지 내 설치되는 한전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84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에 시설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될 수 있음.
- 세종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측벽사인물의 경우 추후 세종시청과 협의를 통해 사인물의 크기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배기팬, 실외기, 환기배관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서측 주출입구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드롭오프존이 계획되어 있으며, 견본주택 모형도 및 단지배치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발전모듈,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눈부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는 동출입구의 경우 타 동출입구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내 외부 마감수준은 인허가도면, 모형,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등 분양 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시공되며 이 외의 추가적인 마감요청 등은 제시할 수 없음.
- 본 사업장 인근 공동주택용지 등의 공사 진행에 따라 입주 후 공사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모형도에 표현된 단지 외관의 B.I(로고)등의 크기 및 위치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차단기 설치 위치의 경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현장의 단지 내 도로 등의 레벨은 분양시점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사업지구 준공 시 도로의 레벨 등이 변경될 경우 단지 내 도로 등의 레벨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주차의 경우 지하 1층에 구역 및 동별로 집중 배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 사항이며, 향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수,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차 차량 및 인접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지에 돌출되는 실외기, DA 등의 경우 실시공 시 크기,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전기 인입 개폐기 또는 변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905동 데크 하부 및 911동 1층 필로티에 공공 자전거 및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임. ▪ 주동 홀 공간에 있는 테라스는 공용공간이며, 개인이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필로티	▪ 일부 동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연결통로 및 출입구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옆, 상부 등 인근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 세대의 단열재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내부에는 각종 환풍기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입구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문주	▪ 단지 배치여건 및 세대와의 간섭으로 인해 문주가 설치되지 않음.
	주차장	▪ 총 주차대수는 992대(아파트 971대, 근린생활시설 21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지하 1층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과 아파트 주차공간이 함께 있으나, 아파트 주차공간에는 추가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통제될 예정임. ▪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서로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없음. ▪ 지하 2층 주차장에서는 일부동(902, 903, 904, 908, 909, 910동)만 세대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타 동은 지하1층으로 통하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후 세대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함.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트랜치 위치 및 규격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각 동별로 접근성이 상이하오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층별 및 동별 설치위치와 개소가 상이하며, 또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와 개소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에 따라 적정 설비 및 방재 계획이 되어 있고, 전기차 인근에 설치되는 방재시설물은 입주민의 개인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택배차량의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8m(지하1층)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공 시 유효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설치 예정이며, 동별 이용거리 및 이용개수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단, 무인택배시스템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 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수 계획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산정방식에 따라 층수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일부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의 세대창고가 설치되며, 이용 세대 배정은 입주 이후 입주민의 자체적으로 결정, 운영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이며, 지하 1층의 경우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클럽, GX, 다함께 돌봄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오픈키친, 공유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다목적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입주 시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2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레이아웃 및 실별 구성은 모형을 기준으로 추후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오나, 인허가 진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회의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오픈키친, 게스트하우스 등]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에는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및 실외기실 루버의 경우 추후 크기 및 설치위치가 변경, 추가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인근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투시,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총 3개소 (904, 905동 하부, 907동 하부, 911동 하부) 로 나뉘어져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설계변경에 따라 출입구 위치, 단차,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사인물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1층 램프 인근에 위치하며, 아파트 주차장 출입시 차단기를 통하여 이용하여야 함으로 인해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주차장이 단지 동측(부출입구)과 서측(주출입구)에 나뉘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에 배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실외기 소음, 분진, 시야차폐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하여야 함. ▪ 단지 내 설치되는 상가용 전기 인입 개폐기 또는 변압기, 맨홀 등이 근린생활시설 남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냄새,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면 도로와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모형 및 CG에는 없는 계단 및 경사로가 추가로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지반	▪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흙막이 공법은 시공성 안정성,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 단지 내 지하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조경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 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상 912동과 909동 사이 단지 조경에 상수리나무 보존녹지(TPA)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위는 지하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으로 설치됨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면 조적 및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 또는 도장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 본 아파트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관청인 관할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901동	▪ 주동 1-3호 라인, 4-5호 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3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2호 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맘스라운지, 드롭오프존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맘스라운지, 케어키즈존, 경비실은 5호 라인 1층에 계획되어 있음) ▪ 주동 서측 과 남측에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지상 1층 4호 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3호 라인에 1개소, 4-5호 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902동	▪ 주동 1-2호 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3-4호라인은 돌출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2호 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위치한 천창(탑라이트)로 인해 소음 및 빛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남측에 공개공지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등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문화공원(계획)이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등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북동측에 주민카페 및 부차온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 라인 북측, 4호라인 북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남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 라인 필로티 하부, 1호라인 북동측, 4호라인 측벽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 라인에 1개소, 3-4호 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903동	▪ 주동 1-2호, 3-4호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2호 라인 서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위치한 천창(탑라이트)로 인해 소음 및 빛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중앙녹도 및 공공보행통로, 남동측에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 및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남서측에 문화공원이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 및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리딩라운지 및 부차온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3호 라인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 라인 동측, 3호라인 남측, 4호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 라인에 1개소, 3-4호 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옥외안테나,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어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04동	▪ 주동 1-2호 라인은 돌출형 동출입구, 3-4호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4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 라인 북동측, 4호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4호라인 북측에 위치한 천창(탑라이트)로 인해 소음 및 빛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남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주동 3호 라인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라인 측벽, 4호라인 필로티 하부, 4호라인 서측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 라인에 1개소, 3-4호 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옥외안테나,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어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05동	▪ 주동 1-2호 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3-5호라인은 돌출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2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5호라인 북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 및 남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북측 데크 하부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소음, 분진, 진동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 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라인 1개소, 3-5호라인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906동	- 주동 1-3호 라인은 돌출형 동출입구, 4-5호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남측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으로 인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북서측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 라인 측벽, 4호 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3호라인에 1개소, 4-5호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907동	- 주동 1-2호 라인은 필로티형 출입구, 3-5호 라인은 돌출형 동출입구, 6-7호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라인 서측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으로 인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1-3호라인 북측, 6-7호라인 서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남측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서측, 7호라인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5호 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라인에 1개소, 3-5호라인에 1개소, 6-7호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6호라인 1층에 웨더프리존이 계획되어 있음.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908동	- 주동 1-2호라인, 3-5호라인은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북측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으로 인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1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라인 북측, 3-4호라인 서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부대시설로 연결되는 선크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서측과 북측에 수직폴리(E/V 및 계단실)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 및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서측 중앙녹도를 따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리딩라운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북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 3호 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라인에 1개소, 3-5호라인에 2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옥외안테나, 위성안테나,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어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09동	- 주동 1-2호라인, 3-4호라인에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4호 필로티 하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상수리나무 보존녹지(TPA)가 지정되어 있음. - 주동 북측에 부대시설로 연결되는 선크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1호라인 북측에 부대시설 실외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수직폴리(E/V 및 계단실)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 및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 중앙녹도를 따라 경로당, 실내놀이터, 수직폴리(E/V 및 계단실), 재활용나눔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3호 라인 남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라인 측벽, 2,3호 라인 필로티 하부, 4호라인 측벽에 DA,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라인에 1개소, 3-4호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옥외안테나,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어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10동	- 주동 1-2호라인 출입구와 3-5호라인에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호라인 서측, 5호라인 서측, 2,3호라인 필로티 하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1호라인 북측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으로 인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부대시설로 연결되는 선크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3호라인 동측에 부대시설 실외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수직폴리(E/V 및 계단실)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 및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남측에 상수리나무 보존녹지(TPA)가 지정되어 있음. - 주동 동측 중앙녹도를 따라 경로당, 실내놀이터, 수직폴리(E/V 및 계단실), 재활용나눔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서측, 3호라인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2,3호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2호라인에 1개소, 3-5호라인에 2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옥외안테나, 중계장치)가 계획되어 있어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11동	- 주동 1-7호라인 출입구는 1-2호라인에 돌출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1층에 공공자전거보관소, 바이크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분진, 소음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1층에 웨더프리존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의 1,3,5,7층은 중앙에 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6호라인 남측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7호 라인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서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지상 1층 1호라인 남측, 7호라인 측벽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7호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해당 동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있어, 복도를 통해 1-7호라인이 연결되어있는 구조임.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912동	▪ 주동 1-3호라인, 4-5호 라인출입구에 필로티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음. ▪ 주동 3호라인 1층에는 커뮤니티 로비 및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음. ▪ 주동 4,5호 라인 동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분진,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2호라인 서측과 4호라인 1층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통행으로 인해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5호라인 동측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채광 및 조망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등의 공해가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동측에 상수리나무 보존녹지(TPA)가 지정되어 있음. ▪ 주동 5호 라인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계절별 해충,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주동 1호라인 남측에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맘스라운지, 드롭오프존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서측 약 20.5m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소음, 분진, 빛 공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지상 1층 2호 라인 필로티 하부에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1-3호 라인에 1개소, 4-5호 라인에 1개소로 계획함. ▪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 등)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단위세대	공통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 및 입면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함.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팸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함. ▪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가구의 내부 상세 및 규격, 치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벽,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의 천장고는 1~2층 2.5m, 3층 이상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견본주택의 천장고는 1층~2층 기준 2.5m임)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 내 결로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단열재의 경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 내에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소음이 생길 수 있음. ▪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외기실의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 ▪ 실외기실 내부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음. ▪ 실외기실은 주동 및 단열계획에 따라 세대마다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하향식피난구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철제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 천장에는 상부세대의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최하층세대 천장~최상층 바닥까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이며(필로티 상부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제외), 동일 타입이라도 유효치수가 상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하향식피난구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빛 공해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 환기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및 타입별 발코니 확장 유무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세대에는 외부 유입 우수 배수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입상 노출 배관이 시공될 수 있음. ▪ 84C-1/C-2/C-3, 84E-1/E-2 타입에 설치되는 오픈형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 드레인(유가)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청소 등의 과도한 물사용 시 아래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식 사용을 권장함. ▪ 84C-1/C-2/C-3, 84E-1/E-2 타입에 설치되는 오픈형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 되지 않으며, 또한 우수 배수를 위한 별도의 입상 배관도 설치되지 않고, 벽면으로 우수를 흘려보내는 타입으로 설치됨. 이에 따라 해당 타입 세대는 상부 오픈형 발코니로 인해 물뚝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 및 침실1, 침실2(45타입의 경우, 거실, 침실1, 침실2)에 매립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설치됨.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장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욕실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됨. ▪ 석재류 및 타일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션감지 센서로 작동되는 센서 타입의 절수기 설치 예정으로 바닥면에 절수기 페달이 노출되지 않음. ▪ 주방 렌지후드 내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화재 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주방TV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및 수량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격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해야 함.
--	--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천장 조명위치는 기본형과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류 등의 마감재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에 따라 자재 특성상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형식으로 공급될 예정임.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다용도실의 천장재 및 천장고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의 경우,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단위세대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간접조명의 설치공간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함.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디딤판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청소 시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의 거울에는 세정제(화학약품 포함)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약품 사용 시 거울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A/S는 불가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창호 크기 및 개수는 주동타입/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계약자의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계약자에게 인도하기로 함. ▪ 84D, 84E-1/E-2 타입 다용도실은 환기를 위한 환풍기가 설치됩니다.
창호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은 외측 유색(다크그레이), 내측 백색이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경우 무전원 자동루버가 설치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창호유리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거실,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주방, 오픈형발코니 :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 안방 내창 : 22mm일면 복층유리 이중창 / 안방 외창 : 22mm일면로이 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시, 발코니 내측에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 22mm일반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비확장 시 발코니 확장 선택 시와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 발코니 샷시는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안방 제외),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가 확장공사 및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음.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확장세대와 다르게 가구 및 조명 설치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시 제공 혹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공되지 않음.
 - 발코니의 경우 단위세대 조합 및 형태에 따라 실사용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홈 네트워크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설비비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계환기설비	▪ 안방발코니(실외기실)에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노출 설치됨. ▪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음. ▪ 기계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권장 필터 교체는 6개월 주기) ▪ 기계환기설비에 피톤치드 기능이 있으며, 피톤치드 액상 소진 시 장비업체를 통해 별도 구매가 가능. ▪ 기계환기설비는 덕트세척이 용이한 제품으로, 덕트 세척은 장비업체를 통해 진행가능하며 세척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건본주택	공동사항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5m(1~2층 세대 기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 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건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건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함.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음향설비,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시공 시 미설치됨.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발코니 수전 및 콘센트는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가구 주위, 문틀 주위 등 코킹은 본시공에서 동일하게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건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할 예정임.
	사이버 건본주택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건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복리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건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함.
계약관련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유의 사항	▪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 ▪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함.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함.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됨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짐 ▪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
	계약 시 주의사항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동선 7m, 보조동선 6~6.5m	지하 1층 : 2.8m, 지하 2층 : 2.4m	2.8m

■ 주차시설

- 주차대수 : 지하 총 992대(아파트 971대, 근린생활시설 21대) ※ 전기차 충전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함
- 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공간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전기차 외의 자동차가 사용 가능한 주차대수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및 실 시공 등에 따라 주차대수, 전기차 충전설비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75,668,631,022		공사비 (51)		기계 설비 (9)		위생기구설비공사		1,055,593,000									
			기간이자		5,500,046,996						난방설비공사		790,771,000									
			필요적 경비		3,949,239,524						가스설비공사		575,713,000									
			그 밖의 비용		1,218,753,267						자동제어설비공사		185,038,000									
공사비 (51)			토목 (13)		토공사						7,878,578,000		그밖의 공종 (4)		특수설비공사		313,373,000					
					흙막이공사비						-				공조설비공사		930,244,000					
					비탈면보호공사						-				전기설비공사		14,430,332,000					
					옹벽공사						857,177,000				정보통신공사		3,638,870,000					
					석축공사						-				소방설비공사		7,420,922,000					
					우수·오수공사				1,357,198,000		승강기공사				-							
					공동구 공사				-		그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4,578,296,7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이윤		6,867,211,348					
					도로포장공사				1,357,198,000						간접비 (6)		설계비		2,823,162,011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				감리비				1,915,717,078					
					정화조시설공사				-		일반분양시설 경비		4,640,733,839									
					조경공사				5,586,789,000		분담금 및 부담금		1,084,926,276									
					부대시설공사				-		보상비		-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6,041,734,000		기타 사업비성경비				30,548,380,388					
									가시설물공사		2,954,648,000		그밖의 비용(1)				77,792,845,551					
									지정 및 기초공사		4,261,845,000											
									철골공사		-											
									건축 (23)			기계 설비 (9)		급수설비공사			5,130,541,000		합계		387,965,700,000	
														급탕설비공사		4,489,224,000						
								오배수설비공사						3,206,588,000								
					철근콘크리트 공사		56,165,301,000															
					용접공사		-															
					조적공사		1,114,097,000															
미장공사		3,693,604,000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2,454,996,000																				
목공사		6,013,130,000																				
가구공사		1,404,129,000																				
금속공사		1,050,646,000																				
지붕 및 흙통공사		-																				
창호공사		3,778,997,000																				
유리공사		1,596,948,000																				
타일공사		3,048,727,000																				
돌공사		392,470,000																				
도장공사		1,920,820,000																				
도배공사		947,076,000																				
수장공사		1,683,690,000																				
주방용구공사		936,086,000																				
그 밖의 건축공사		12,714,663,0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택지비 가산비	택지대금 기간이자		5,500,046,99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취득세	취득세	3,026,745,240	
		지방교육세	302,674,524	
	재산세	재산세	317,808,249	
		지방교육세	63,561,649	
		재산세 도시지역분	222,465,774	
	등기수수료	보수료	15,638,549	
		인지세	345,539	
	지역난방부담금 등		1,218,753,267	
합 계		10,668,039,787		
건축비 가산비	구조형식가산비		3,893,380,406	
	법정초과조경 설치		522,614,138	
	저층부 석재마감 공사비		4,008,352,200	
	돌출형발코니 설치		77,717,880	
	공용부 창호 설치		156,700,710	
	지하주차장 LED등		158,488,000	
	실외기실 무전원루버		1,196,320,500	
	트랜스퍼 구조보강		-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3,967,257,341	
	홈네트워크		9,397,016,000	
	초고속특등급		2,384,650,200	
	에어컨냉매배관		4,074,196,100	
	기계환기설비공사		8,490,848,000	
	쓰레기 집하시스템(크린넷)		4,347,750,00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4,015,963,602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1,636,700,500	
	설계비		350,013,682	
	말뚝박기 공사비		14,351,455,451	
	흙막이 공사비		3,998,810,925	
	안전관리비		239,828,176	
	전기차충전시설		601,440,000	
	소방법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	
	건강친화형주택 확대적용		9,023,341,740	
	분양보증수수료		900,000,000	
	합 계		77,792,845,551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6-101-0004100호	271,424,9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 ④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갑”이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회사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대윤엔지니어링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현대공영(주)
계약금액	3,429,965,000	605,705,700	898,315,000	61,6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상 호	세종에스원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우미건설(주)	우미건설(주)	코리아신타(주)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9길 7, 6층(서초동, 서초미래빌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대치동, 해성2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0928963	205211-0001385	205211-0001385	110111-2937831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분양 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044-866-3666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5-30	https://sj3.lynn.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세종 우미 린 센터파크** 건본주택 및 대표번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